

주간 관세무역정보 vol.2200
2026.10.26.

美 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정부 지원받는다

[이주의 초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 2026년 10월 22일 시행 (4p)

[위클리뉴스]
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소급 적용 (8p)

[세계 무역장벽: 러시아]
러시아, 비우호국 관세 확대… K-푸드 수출에 변수 (12p)

[오피니언]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임박…
품목분류·인도조건 점검이 핵심 (16p)

[관세행정]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ODES와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23p)

[판례 동향]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례해설 (33p)

[품목분류 동향]
"형태·조리 따라 다르다" 일부 열처리한 새우의 HS Code (40p)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AI 생성 이미지

발 행 인 김종호
편 집 인 남성훈

총 괄 김민정

취 재 강보람 aorigaski@kctdi.or.kr
김성은 ray1023@kctdi.or.kr
김다솔 kds5817@kctdi.or.kr

마 케 팅 김진우 kjw@kctdi.or.kr

디 자 인 경성문화사

발 행 처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발 행 일 2026년 10월 26일(통권 제2200호)
I S S N 2799-7251
e-ISSN 2799-726X
등록번호 서울 다07117(2005.5.20.)
주 소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로 22 6층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홈페이지 www.kctdi.or.kr
S N S blog.naver.com/kctdi1964
www.instagram.com/kctdi_library

* 본지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지에서 제기한 의견 등은 필자가 소속한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이주의 초점

04 美 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정부 지원

08 Weekly News

세계 무역장벽: 러시아

12 러시아, 비우호국 관세 확대…
K 푸드 수출에 변수

오피니언

16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임박···
한국도 규제 영향권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관세행정실무해설

23 **관세행정안내**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ODES와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이득렬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관세사)

31 **질의응답사례**

세액 납부 유예 제도

판례동향

33 **관세판례해설**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례

이하철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품목분류동향

40 **세번 바로잡기**

형태·조리에 따라 다른 새우 품목분류

이영주 중앙관세분석소

이주의 초점

美 관세·수출통제 피해기업도 정부 지원

「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 2026년 10월 22일 시행

외국 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 수출통제 등으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26년 10월 22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의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주요 지원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외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지원 대상은 외국통상조치 피해기업으로 넓어졌고,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에 판로개척 지원이 추가됐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과 지원 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를 정한 고시 또한 같은 날 시행됐다.

관세율 넘어 단가 협상·통관 대응까지 수출기업 부담

미국의 관세 강화가 이어지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부담은 단가 협상과 통관, 원산지 관리 등 거래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관세는 미국 수입업자가 납부하지만, 수입업자가 수출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계약 조건을 바꾸면 국내 기업도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25년 5월 발표한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의 영향 및 대응과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가운데 수출기업 150개사가 꼽은 최대 실무 애로는 '미국 수입업체와의 단가 조정 협상'이었다(응답률 53.4%). '미국 현지 통관절차 관련 정보'가 21.3%, '원산지 판정 기준 관련 세부정보 파악'이 13.3%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2025년 9월 9일부터 18일까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3.6%가 '단가 인하 압박 등 관세 부담 전가'를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미국 거래처의 수출계약 지연·취소'도 51.8%에 달했다.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기업도 83.7%였다.

관세정책의 법적 근거가 계속 달라지는 점도 부담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6년 2월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그에 따른 상호관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무역법 122조·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통상법을 활용해 관세정책을 재편하고 있다.

통상장벽 강화는 미국에만 그치지 않는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철강 무관세 수입 물량을 연간 1,830만톤으로 제한하고, 할당량을 넘는 수입품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외국의 통상조치로 인한 기업 피해는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단가 인하 압박과 계약 지연·취소, 관세 대상 여부 확인, 원재료 함량 산정, 통관·원산지 관리, 대체시장 발굴 등으로 이어진다.

외국 통상조치 피해 지원··· 서비스기업 관련 조문도 정비

산업부에 따르면, 종전 「통상변화대응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즉,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등으로 수입 경쟁이 심해져 피해를 본 국내 기업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개정된 법 제2조 제1호의2는 **외국통상조치를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규정**해 지원 범위를 넓혔다. 「통상변화대응법 시행령」 제6조도 기존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절차를 외국통상조치 피해기업에 적용하도록 정비됐다.

서비스무역과 상업적 주재에 관한 조문에는 외국통상조치 상대국이 추가됐다. 기업이 상대국에 법인이나 지점 등을 두고 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되면서 외국통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서비스기업도 관련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무역구제는 제외, 수출통제는 포함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2026년 10월 22일 시행된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에 담겼다. **▲보편·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 지원** 등 4가지다.

관세 분야에서는 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최혜국 관세율이나 한국과 체결한 FTA의 협정관세율을 초과해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조치가 대상이다. 최혜국 관세율은 WTO 회원국에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세율이며, 협정관세율은 FTA 원산지 기준 등을 충족한 상품에 적용하는 우대세율이다.

다만 외국이 부과한 모든 추가 관세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WTO 협정이나 FTA 규범에 따른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덤핑방지관세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된 물품이 국내 산업에 피해를 줄 때 부과하며, 상계관세는 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한다. 세이프가드는 수입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취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다.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연번	조치명	세부설명
1	**보편·상호관세 및 품목별 추가관세**	다른 국가가 세계무역기구 협정 최혜국 관세율 또는 우리나라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초과하여 자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관세조치. 단, 세계무역기구 협정 또는 각 자유무역협정 규범에 부합하는 무역구제조치(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는 제외한다.
2	**전략물자·이중용도품목 수출통제**	다른 국가가 자국의 안보 또는 국익을 이유로 지정한 특정 품목(물질·시설·장비·부품·소프트웨어 및 기술 등을 포함한다)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 또는 자국의 기술·소프트웨어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하여 제3국에서 개발·생산된 제품을 수출, 재수출 또는 이전하고자 할 때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제한하는 역외적용 조치.
3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통상 규제**	다른 국가가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 또는 환경 부담에 조세, 부담금 또는 기타 비용을 부과하거나, 역내 기업 및 그 공급망에 속한 국내외 협력 기업에 대해 환경, 인권 관리 실태 검증·실사 및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환경·사회·지배구조(ESG)를 기반으로 하는 일방적 통상 규제 조치.
4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다른 국가가 자국의 전략산업(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반도체, 핵심광물 등)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역내 생산·조립 비중 또는 특정 공급망 요건을 충족한 제품·기업에 한하여 차별적으로 재정적 지원(보조금, 세액공제, 융자 우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을 제공하는 조치.

출처: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 [별표 2]

전략물자와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도 외국통상조치에 포함됐다. 「통상변화대응지원대상 외국통상조치의 범위 지정 고시」에 따르면, 다른 국가가 안보나 국익을 이유로 특정 물질·시설·장비·부품·소프트웨어·기술 등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다른 국가의 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제3국에서 생산한 제품의 수출·재수출·이전 시 해당 국가의 사전 허가를 요구하는 역외적용 조치도 포함된다.

ESG 통상 규제에는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이나 환경 부담을 기준으로 조세·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기업과 협력업체에 **환경·인권 실사 및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치**가 해당한다.

다른 국가가 전기차·배터리·재생에너지·반도체·핵심광물 등 자국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역내 생산이나 특정 공급망 참여를 조건으로 보조금·세액공제·우대융자를 제공하는 차별적 지원**도 대상에 포함됐다.

판로개척 지원 추가··· 전담기관 업무도 확대

기업 지원수단에는 판로개척이 추가됐다. 개정 전에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을 제공했지만, 「통상변화대응법」 제8조는 여기에 더해 판로개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통상변화대응법 시행령」 제24조는 판로개척 지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위탁업무에 추가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개척까지 연계한다.

「통상변화대응법」은 종전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명을 바꿔 2024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받은 기업은 누적 603개이며, 융자와 컨설팅 지원 규모는 총 1,367억원이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외국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지원 대상 확대에 맞춰 기업 지원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김성은 기자 |

2026년 3분기 수출 전년 대비 72.3% 증가··· 반도체가 견인

수출 증가세 IT에 집중··· 한은 "4분기 비IT 업황도 개선"

올해 3분기 관세청 통관 기준 수출이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72.3% 증가했다. 글로벌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가 반도체 수요와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상품수지 흑자도 확대됐다. 내년에도 반도체에 힘입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10월 22일 발표한 '경제상황 평가'에 따르면, 3분기 수출액은 3,186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3%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2,031억달러로 25.0% 증가했다.

2026년 3분기 수출액·수입액&증감률

구분	통관 기준 수출액	증감률	통관 기준 수입액	증감률
7월	992억달러	63.4%	685억달러	26.4%
8월	984억달러	68.9%	635억달러	22.4%
9월	1,211억달러	83.7%	711억달러	26.0%
3분기	3,186억달러	72.3%	2,031억달러	25.0%

자료: 한국은행 '경제상황 평가', 정리: 주간관세무역정보

수출 확대는 국제수지에도 반영돼 상품수지 흑자는 7월 404억달러에서 8월 468억달러로 늘었다. 경상수지 흑자도 같은 기간 421억달러에서 461억달러로 확대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수출 증가를 주도했다. 컴퓨터와 기계류 등도 수출 증가에 힘을 보탰지만, 자동차 등 일부 비IT 품목의 기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한국은행은 3분기 IT 부문의 수출과 투자가 국내 성장세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4분기에 반도체 경기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IT 업황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AI 인프라 투자가 이어지면서 세계교역은 관련 제품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은 올해 및 내년 성장률을 지난 8월 전망(3.3%, 2.9%)을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봤다. 다만, AI 수익화와 투자 속도, 향후 반도체 경기, 주요국 통상갈등과 중동 정세 등을 수출입 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꼽았다. | 김성은 기자 |

베트남, 내국수출입 부가가치세 환급 소급 적용

산업통상부는 최근 **베트남 당국이 전국 성·시 세무기관에 내국수출입 거래 부가가치세 환급의 소급 적용을 지시**했다며 베트남 진출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이 해결됐다고 10월 19일 밝혔다.

내국수출입제도는 수출용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 내 위치한 기업끼리 거래하더라도 수출입 거래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한국의 내국신용장제도와 유사하다. 베트남에 소재하는 수출자는 거래과정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어 자금부담을 덜 수 있다.

베트남은 내국수출입제도를 시행해 관행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을 했으나 2022년과 2023년, 유권해석해 '베트남에 대표사무소 등이 있는 외국상인'의 이유를 들어 이를 제한했다. 유예기간 없이 즉시 제한되면서 그동안 환급을 받았던 베트남 진출 기업은 환급이 보류됐고 자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베트남한인상공인연합회(KOCHAM, Korean Chamber of Commerce)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급 지연액 등은 최소 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확인됐다.

내국수출입제도 거래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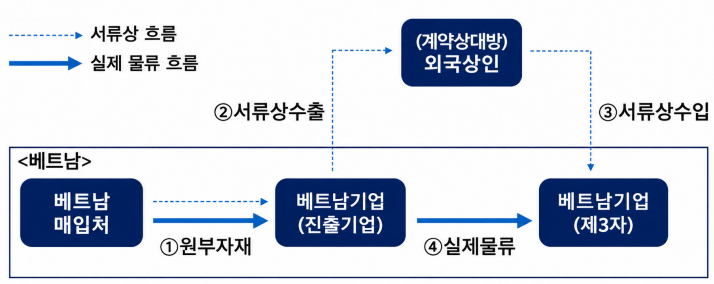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부

한국 정부는 베트남 당국에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고 그 결과 2025년 7월 관련 법률 및 시행령에 반영돼 베트남 소재 여부와 관련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이후, 2025년 8월 개최된 베트남 재무부 장관 면담과 2026년 6월 열린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등을 통해 환급제도 소급 적용을 요청했다. 이에 베트남 과세당국은 세법개정 이전에 이뤄진 내국수출입 거래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과거 거래에도 적용하라는 내용을 지방 세무국에 지시해 환급이 지연됐던 건에 대해서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 김다솔 기자 |

열처리가금육에 제주산 소·돼지까지 축산물 수출길 확대

한국산 열처리가금육 제품이 **처음으로 베트남 수출길**에 올랐다. 아울러 싱가포르로 제주산 소·돼지 포장육 등의 수출이 허용된 이후 수출량이 크게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익산에서 열린 'K-닭고기 가공품 베트남 첫 수출 선적식'을 통해 초도 물량의 선적을 확인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2026년 4월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처리가금육에 대한 양국의 위생·검역 협상이 타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닭고기 생산·가공업체 하림은 올해 2톤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베트남 수출 규모를 약 70톤, 7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베트남은 빠른 경제성장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K-푸드에 관한 관심이 높고,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수출 유망국이다. 베트남은 삼계탕뿐 아니라 치킨너겟과 닭강정 등으로 수출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국내 닭고기가공품의 對베트남 수출액은 2026년 8월 기준 248억 원을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39.5% 증가했다. 특히, 육류 시장은 2020년에 77억달러에서 2024년에 110억달러를 달성해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싱가포르&베트남 기존·신규 수출허용 품목

국가	기존 수출 품목	신규 수출허용 품목
싱가포르	멸균 식육가공품(소·돼지·가금류) 열처리 식육가공품(돼지·가금류) 멸균 알가공품, 식용란	포장육(제주산 소·돼지) 열처리 소고기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
베트남	포장육(가금육)	열처리 가금육(닭·오리)가공품

싱가포르 수출 품목도 늘었다. **2025년 11월 수출 검역협상을 타결해 제주산 소·돼지 포장육과 열처리 소고기 가공품, 열처리 알가공품을 신규 허용 품목에 포함**했다. 제주 농축산식품국에 따르면 202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수출해 2026년 6월 말 기준 제주산 소·돼지의 싱가포르 수출량은 91.9톤, 수출액은 190만 2,000달러에 달해 이미 전년도의 제주도 총 축산물 수출액(67.2톤, 131만 5,000달러)을 넘어섰다.

축산물 수출품목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해 식약처는 신규 수출품목과 검역요건을 반영한 '축산물 등 동물성 식품 수출안내서'를 개정했다고 10월 22일 밝혔다. 안내서에는 싱가포르와 베트남의 신규 수출 허용 품목을 비롯해 국가·품목별 수출작업장 등록방법, 수출 대상국의 작업장 승인기준 등이 담겼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다솔 기자 |

CBP에 직접 듣는 미국 관세···11월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관계자가 방한해 최근 美 관세조치와 수입통관 절차를 국내 기업에 직접 설명한다.

관세청은 '코리아 커스텀즈 위크(KCW, Korea Customs Week) 2026'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롯데호텔 월드에서 개최한다. 주요 관세·통상 현안을 다루는 행사로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첫날인 11월 2일에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와 기업 대응을 주제로 CBP 초청 설명회가 진행된다. CBP 현장운영·무역 담당 간부와 실무진이 최근 관세조치와 수입통관 절차, 관세회피 단속, 수입신고 적정성 검증을 소개한다. 바이오·농식품 수출화물 검역도 의제에 포함됐다.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공급망, 비특혜 원산지 등 주요 통관 위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1월 3일에는 브라질·몰디브·피지 관세청장과 베트남·인도·필리핀·이집트·케냐 관세당국 고위급,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ESCA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가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 관세행정 혁신, 무역원활화 사례를 공유한다.

마지막 날인 11월 4일에는 주한 EU 대표부 관계자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최신 동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對EU 수출 과정에서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과 대응 방안을 안내한다. 이어지는 국제원산지 세미나에서는 한국과 EU의 비특혜 원산지 제도와 검증 사례를 살펴본다.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FTA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김성은 기자 |

관세청 인사

■ 부이사관 승진 (2026년 10월 23일자)

관세청 대변인 정 구 천 (鄭求天)

관세평가분류원장 오 현 진 (吳鉉鎭)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국장 강 병 로 (姜秉輅)

러시아, 비우호국 관세 확대… K 푸드 수출에 변수

라면·커피 등 품목별 차등 적용
2026년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은 35%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이 위축됐지만, 한국산 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을 대상으로 특별관세를 확대하면서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러시아는 10월부터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특별관세 35%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한국무역협회 K-Stat에 따르면 양국 교역액은 2022년 211억 4,500만달러에서 2024년 114억 200만달러로 약 46% 감소했다. 2026년 1~8월 한국의 對러시아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 수출액도 3억 5,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9% 줄었다.

對러시아 한국산 식품·라면 수출액 추이(2021~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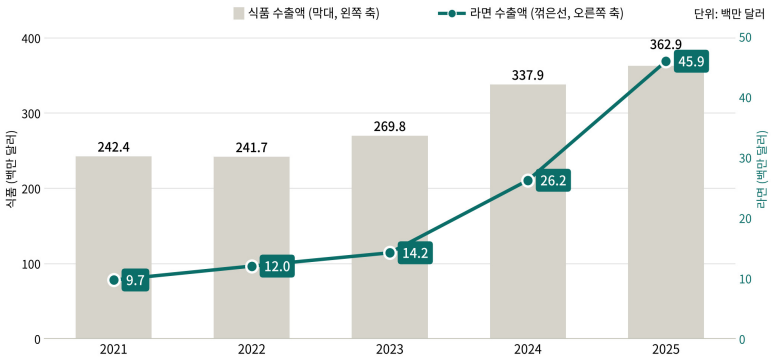

자료: KATI 농식품수출정보, 정리·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25 농식품 수출국가조사 러시아'에 따르면 2020~2024년 한국산 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액은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16.9%를 기록했다. aT가 2026년 2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2025년 한국산 식품의 對러시아 수출액은 3억 6,300만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비우호국 특별관세, 2022년 도입 이후 반복 개정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지도와 인기는 커지고 있지만, 수출기업이 느끼는 장벽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정부는 2022년 12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비우호국 원산지 특정 제품에 특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후 정부령을 거듭 개정하며 적용 대상과 세율을 조정해왔다.

러시아의 비우호국 특별관세는 2022년 12월 7일 제정된 연방정부령 제2240호에 근거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에 대응해 도입한 조치로, 한국·미국·일본·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비우호국[1] 원산지의 특정 수입품에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Eurasian Economic Union)의 공통관세율과 다른 '특별관세율'을 적용한다. aT 모스크바지사가 2026년 9월 KATI 농식품수출정보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특별관세는 러시아 연방정부령에 명시된 품목번호와 품명,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는 제품에 부과된다. 세율도 품목에 따라 다르다. 수입가격에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종가세뿐 아니라 중량이나 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종량세, 두 방식을 결합한 복합세율도 적용된다.

최근 개정에서는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특별관세 대상에 추가**됐다. 러시아정부는 2026년 9월 21일 연방정부령 제1203호를 제정해 기존 제2240호의 특별관세 대상에 식품용 생물학적 활성보충제[2]를 추가했다.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 10월 6일 발표한 '러시아 주요 경제정책 동향'에 따르면, 해당 조치는 10월 2일부터 시행됐으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대상은 **EAEU 통합상품분류번호**(TN VED EAEU) **제2106.90.980.8호**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특별관세율은 35%**다. 해당 품목의 일반관세율 12%와 비교하면 23%p 높다.

상품분류코드	품명	관세율	적용 대상 국가	적용 기한
2106.90.980.8	소비자용 포장 상태의 식품용 생물활성보충제(건강기능식품 등)로서, 러시아 연방정부령 (2023.5.31.일자 제886호)에 따라 식별표시(라벨링) 부착된 것	35%*	모든 비우호국 (헝가리·슬로바키아 제외)	2027.12.31.까지 (당일 포함)
		12%	비우호국 이외 국가	-

* 수입관세율을 적용할 때는 EAEU 통합상품분류번호와 품명뿐만 아니라 원산지 및 별도 적용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료: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1203호, 정리: 주간 관세무역정보)

1)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비우호국 개념을 도입했다. 2022년 3월 발표한 비우호국 명단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EU, 호주, 영국, 아이슬란드, 캐나다, 싱가포르, 대만, 스위스 등 22개국이 포함됐다.

2) 러시아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생물학적 활성보충제(Bioligically active additives)'라고 지칭한다. 비타민·식이섬유 등을 공급하는 제품, 꿀·로열젤리 등 특정 성분이 함유된 제품 등이 포함된다.

러시아의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식품 부문에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시장 중 하나다. aT의 '2024 러·우 전쟁 이후 러시아 식품시장의 변화'에 따르면, 러시아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2023년 269% 성장했다.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의 러시아 수출도 증가하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2025년 9월 발표한 '소비재 수출동향과 유망시장'에 따르면, 한국의 건강기능식품(HS 제2106.90-9099호) 수출은 전년 대비 2023년 21%, 2024년 7% 증가했다. 특히 2024년 對러시아 수출은 14.5% 늘었으며, 러시아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5대 수출시장에 포함됐다.

라면·과자·소스류도 대상… 원산지 입증 중요

건강기능식품 외에도 라면·과자·커피·소스류 등 한국의 주요 수출식품과 관련된 품목에도 특별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aT 모스크바지사와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2240호 개정본에 따르면, 일부 파스타류에는 23~25%의 특별관세가 부과된다. **과자·베이커리 제품·커피·소스류도 품목별로 세율이 다르며, 일부 제품에는 중량을 기준으로 한 최저 관세액이 설정**돼 있다. 대표적으로 제1902호에 속하는 일부 파스타류에는 23%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1kg당 관세액이 0.93유로에 미치지 못하면 최소 0.93유로를 부과한다.

aT 모스크바 지사는 "제품의 구성과 가공형태, 세부 품목번호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고 특별관세가 적용되는 제품은 수입원가 상승에 따라 현지 판매가격이나 납품가격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특별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품목분류뿐 아니라 원산지 입증도 중요하다. 러시아 연방정부령 제2240호 제1(1)항은 특별관세 대상 물품의 원산지가 불명확하거나 EAEU 관세법에 따라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특별관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우호국이 아닌 제3국을 거쳐 러시아에 반입되더라도 원산지가 바우호국에 해당하는 한국이면 특별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비우호국 이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도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특별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관련 증빙 관리가 중요하다. 원산지 판정에는 EAEU의 비특혜 원산지 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한 제3국 경유나 재포장만으로 원산지가 변경되지는 않으며, 제품의 생산·가공 과정과 관련 증빙을 토대로 원산지를 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식품에 적용되는 특별관세율

구분	HS Code	관세율
껌, 캔디류 등	1704.10/1704.90	20~35%
초콜릿 함유 조제식료품	1806.31/1806.32/1806.90	kg당 0.6~0.73유로
파스타 등 면류(라면 포함)	1902.11/1902.19/1902.20/1902.30 (라면 등 인스턴트 면류, 23%) 1902.40	23~25% kg당 최소 0.12~0.93유로
빵, 파이, 케이크, 비스킷 등 베이커리 제품	1905.10/1905.20/1905.31/1905.32 1905.40/1905.90	20~25% kg당 최소 0.12~1.88유로
커피류(인스턴트 커피 포함)	2101.11	17.5%, kg당 최소 1.3유로
간장, 케첩 등 소스류	2103.10(간장)/2103.20(케첩) 2103.30/2103.90	16~22.5%
건강기능식품	2106.90.980.8	35%
무알콜 맥주, 향미 첨가 물 등 음료류	2202.10/2202.91(무알콜 맥주) 2202.99	18~19% 혹은 최소 리터당 0.06~0.74유로
맥주	2203.00	리터당 1.5유로

출처: aT 모스크바지사

러시아에 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입업체와 EAEU 10단위 품목번호 및 최신 관세율을 확인하고, 원산지 입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최저 관세액이 설정된 품목은 수입가격과 중량을 함께 고려해 실제 관세 부담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aT 모스크바지사는 “비우호국 대상 특별관세 적용 대상과 기간, 관세율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러시아정부가 특별관세 적용 품목과 세율을 계속 조정하고 있는 만큼, 기존 수출품도 최신 세율과 원산지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김성은 기자 |

EU 산림전용방지규정 시행 임박··· 한국도 규제 영향권

2026년 12월 30일 적용··· 품목분류·인도조건 점검이 대응 핵심



박 주 현
법무법인(유) 율촌 대한민국·미국 변호사

Ⅰ. 들어가며

EU 산림전용방지규정[Regulation (EU) 2023/1115, 이하 'EUDR']의 핵심 의무가 **2026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1] 규정은 2023년 6월 발효됐지만,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개정됨에 따라 적용일이 1년씩 늦춰졌다.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5월 4일 발표한 검토보고서에서 규정 본문을 더이상 고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 이제 추가 연기를 기대하고 대비를 미룰 상황은 아니다.

그 사이 내용도 적지 않게 바뀌었다. 2025년 12월의 개정 규정[Regulation (EU) 2025/2650]은 의무 주체의 체계를 다시 짰고, 2026년 9월 18일 발효한 집행위 위임규정[Delegated Regulation (EU) 2026/2102]에서는 적용 대상 품목을 정한 부속서 I 을 대폭 손질했다.[3] 기존에 적용 대상이었던 품목이 빠지고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새로 추가됐다.

1) Regulation (EU) 2023/111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2023.6.9. EU 관보 게재). 이하 조문은 Regulation (EU) 2025/2650에 따른 개정 후 조문이다.
2)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Simplification review on the Regulation (EU) 2023/1115, COM(2026) 191 final, 2026.5.4.(environment.ec.europa.eu) 참조.
3)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6/2102 of 13 July 2026(2026.9.17. EU 관보 게재) 참조

12월 30일부터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EUDR의 적용 여부와 의무는 품목분류와 통관 구조에 따라 갈리므로, 수출기업이 시행 전에 확인하고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EUDR 개정 내용을 기준으로 한국 수출기업이 시행에 앞서 점검할 사항을 품목, 의무 주체, 계약 순서로 정리하고자 한다.

Ⅱ. 주요 규제 사항

1. 세 가지 요건

EUDR은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의 7개 원자재와 부속서 I 에 열거된 파생제품을 규율한다. 이들 제품은 다음 세 요건을 모두 갖춰야 EU 시장에 출시·유통되거나 EU에서 수출될 수 있다(제3조). ①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일어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됐을 것**, ② **토지이용권·환경·노동·인권·조세 등 생산국 법령에 따라 생산됐을 것,** ③ **실사명세서**(DDS, Due Diligence Statement) **또는 간소화 신고서가 제출됐을 것**이다.

2. 실사 의무

DDS를 제출하려면 실사를 거쳐야 한다. 원자재가 생산된 모든 필지의 지리좌표와 생산 시기 등을 수집하고(제9조), 위험을 평가하며(제10조), 위험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면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11조). 좌표는 위도·경도 소수점 이하 6자리 이상으로 표시하고, 소 이외의 원자재를 생산하는 4헥타르 초과 필지는 폴리곤으로 제공해야 한다. 관련 자료는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3. 적용 일정

원칙은 2026년 12월 30일 적용이다. 대기업 및 일반 사업자는 올해 12월 30일부터 적용되며 2024년 12월 31일까지 설립된 초소·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되지만, 기존 EU 목재규정(EUTR,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대상인 목재·종이 제품에는 해당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제38조 제2항·제3항). 위임규정 2026/2102로 새로 추가된 품목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목재가구나 합판을 수출하는 기업이라면 EU 바이어가 소기업이더라도 12월 30일 적용에 맞춘 자료 요구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Ⅲ. 첫 번째 점검: 대상 품목

1. 품목번호가 대상 여부를 가른다

적용 대상은 부속서 I 에 CN Code[4]로 열거돼 있다. Code 목록에 없다면 규제 원자재가 들어 있어도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위임규정 2026/2102에 새로 추가된 커피 추출물(제2101.11.00호)은 2027년 12월 30일부터 대상이 되지만, 커피 추출물에 설탕과 크리머를 섞은 커피믹스는 통상 '커피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제2101.12호)'으로 분류되고[5] 이 Code는 목록에 없다. 커피 제품이라도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

판단 기준은 EU에서 신고되는 CN Code다. 6단위까지는 HS가 같지만 그 아래 단위는 한국의 HSK와 다르므로, 부속서 I 에 8단위로 특정된 품목은 HSK 분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목록에 있는 Code라도 앞에 'ex'가 붙어 있으면 규제 원자재로 만든 경우에만 대상이 된다. 새로 추가된 조글리세롤(ex 제1520.00호)은 기름야자를 원료로 한 경우에만 대상이고, 다른 유지에서 얻은 것은 같은 품목번호라도 대상이 아니다. 위임규정은 기존의 팜유·천연고무 코드에도 'ex'를 붙였다. 이런 품목은 CN Code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원료를 추적해야 한다. 구속력 있는 관세정보(BTI, Binding Tariff Information)는 품목분류에 관한 결정이므로(EU 관세법 제33조), 이를 받아 들이더라도 품목번호만 확정될 뿐 원료 요건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2. 빠진 품목과 신규 추가된 품목

위임규정 2026/2102에 따라 소의 원피·가죽(제4101호, 제4104호, 제4107호), 컨베이어·전동벨트(제4010호)와 그 밖의 가황고무제품(제4016호), 항공기·자동차용 좌석(제9401.10.00호, 제9401.20.00호), 파종용 대두(제1201.10.00호)가 대상에서 빠졌다. 재생·중고 타이어 등(제4012호)은 신품 트레드(ex 제4012.90.30호)만 남았고, 인쇄물(제49류)은 이에 앞서 2025년 개정으로 빠졌다. 가죽 시트와 고무부품을 쓰는 자동차·부품 업계의 부담은 크게 줄었다. 다만 신품 타이어(제4011호)와 천연고무(제4001호)는 그대로 대상이다.

새로 추가된 품목은 커피 추출물, 조글리세롤·지방알코올·비누 등 팜유 유래 제품 가운데 열거된 코드, 냉동 우설(ex 제0206.21.00호)로 모두 2027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된다.

---

4) EU의 8자리 품목분류 기준으로 한국의 HSK와 앞 6자리가 일치한다.
5) 인스턴트 커피에 설탕 등을 섞은 제품을 HS 제2101.12호로 분류한 예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결정 HQ H308893, 2020.7.15. (rulings.cbp.gov) 참조.

EUDR 적용 대상 주요 품목

7대 원자재	주요 파생제품
소(Cattle)	살아있는 소, 냉장·냉동 쇠고기 및 부속 등
코코아(Cocoa)	코코아두, 코코아 껍질·페이스트·가루·버터, 초콜릿 및 코코아 함유 조제 식료품 등
커피(Coffee)	커피 추출물·농축물, 인스턴트 커피 등
팜유(Oil palm)	팜유와 분획물, 팜너트와 핵, 조유, 기타 야자유, 팜너트와 핵 부산물, 글리세롤, 팔미트산, 스테아르산, 올레산, 기타 공업용 정제 애시드유 및 지방성 알코올 등
대두(Soya)	대두, 대두유와 분획물, 채유적합종자와 콩가루, 오일 케이크, 고체 유박 등
목재(Wood)	땔나무, 숯, 원목, 말뚝류, 목모, 목분, 철도용 받침목, 제재목, 성형 목재, 파티클 보드, 섬유판, 합판, 베니어 패널, 고밀도 목재, 목재로 만든 프레임·상자·통·공구·가구·식기구·주방용품 등의 제품 등
고무(Rubber)	천연고무,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고무로 만든 판·끈·실·타이어·내관·의류·액세서리 등의 기타 제품 등

EU 집행위원회 자료 정리

3. EUDR 적용 제외 대상

집행위 가이던스에 따르면 다른 제품을 지지·보호·운반하는 용도로만 쓰이고 그 제품과 함께 제시되는 일회용 포장재는 EUDR 대상이 아니다.[6] 그러나 같은 종이상자라도 포장재 자체를 상품으로 팔면 대상이 된다. 이번 위임규정은 견본과 시험·분석용 제품, 폐기물, 중고품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Ⅳ. 두 번째 점검: 의무 주체

1. 통관상 수입자가 기준이다

실사와 실사명세서 제출 의무는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하는 '사업자(operator)'가 진다. 집행위 가이던스는 수입품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유통 반입 신고서의 수입자 항목에 기재되는 자를 사업자로 본다.[7]

한국 기업이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이나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CIF,

6) Commission Notice, Guidance document for Regulation (EU) 2023/1115 on deforestation-free products(C/2026/3896, 2026.7.20. EU 관보 게재), 7(a) 참조
7) 위 가이던스, 2(a) 참조

Cost, Insurance and Freight)으로 EU 수입자에게 판매하면 사업자는 EU 수입자이고, 한국 기업은 EUDR상 직접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면 **관세지급인도조건(DDP, Delivered Duty Paid)으로 수출하면서 EU 현지 통관 대리인을 통해 한국 기업 명의로 수입신고를 하면 한국 기업이 사업자가 돼 실사명세서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을 EU에서 처음 유통하는 현지 기업도 사업자로 간주된다(제7조). 따라서 EUDR상 의무 주체는 인도조건과 수입신고 명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 EU에서 생산해도 조달처를 봐야한다

EU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은 원료를 어디서 사는지가 중요하다. EU 공장이 천연고무 같은 원료를 역외에서 직접 수입하면 '사업자'가 된다. 반면 이미 실사명세서가 제출된 원료만 EU 내에서 조달해 제품을 생산하면 '하위 사업자(downstream operator)'에 해당한다.

하위 사업자는 2025년 개정으로 신설된 범주다. 하위 사업자와 거래자(trader)는 실사명세서 제출 의무가 없다. 공급자의 실사명세서 참조번호를 받아 5년 이상 보관할 의무는 공급망에서 첫 번째 하위 사업자·거래자에게만 있고, 정보시스템 등록 의무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있다(제5조). 따라서 같은 제품을 취급하더라도 원료의 조달 방식에 따라 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3. 위험등급은 원자재 생산국 기준이다

집행위는 **2025년 5월 국가별 위험등급을 정했고, 한국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다.**[8] **그러나 위험등급은 제품 수출국이 아니라 원자재 생산국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산 팜유, 브라질산 대두, 코트디부아르산 코코아는 표준위험으로 분류된다. 이를 원료로 쓴 제품은 한국에서 가공됐더라도 위험평가와 위험완화를 포함한 실사가 필요하다. 천연고무의 경우 태국·베트남산은 저위험, 인도네시아산은 표준위험으로 분류돼 원산지에 따라 요구되는 실사의 수준이 갈린다. 저위험국산 원자재만 쓴 경우에도 간이 실사(제13조)로 면제되는 것은 위험평가와 위험완화뿐이고, 필지 좌표를 포함한 정보 수집 의무는 그대로 남는다.

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093 of 22 May 2025 참조

Ⅴ. 세 번째 점검: 계약

1. 정보 제공과 준수 보증은 다르다

한국 기업 대부분은 EUDR의 직접 의무 주체가 아니다. 그러나 의무는 계약을 타고 내려온다. EU 수입자는 실사명세서를 제출하기 위해 필지 좌표와 합법성 증빙을 확보해야 하므로 공급사에 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정보 제공 요구와 함께 EUDR 준수 보증이나 면책을 요구하기도 한다.

정보 제공 의무와 EUDR 준수 보증은 성격이 다르다. 전자는 보유하거나 확보할 수 있는 정보를 넘기는 의무고, 후자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다. 상위 공급망을 통제하지 못하는 공급사가 준수를 보증하면 원자재 생산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까지 떠안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보증 범위를 자사가 제공한 정보의 정확성으로 한정하고, 배상 한도와 법령 변경 또는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처리 기준을 정해 두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상위 계약이 먼저다

상위 공급자와의 계약도 함께 정비해야 한다. 정제사나 트레이더로부터 필지 좌표를 받을 계약상 근거가 없으면 하위 사업자의 요구를 이행할 방법이 없다. 필지 좌표와 증빙의 제출을 대금 지급이나 선적의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방식이 실효적이다. EUDR 조항이 없는 기존 장기 공급계약이라면 12월 30일 이후 선적분에 적용할 조건을 따로 합의해야 한다.

Ⅵ. 검사와 제재

1. 검사 비율과 통관 보류

EUDR의 집행은 회원국 관할당국이 맡는다. 관할당국은 원자재 생산국의 위험등급에 따라 매년 일정 비율 이상을 검사해야 한다. 저위험은 사업자 등의 1%, 표준위험은 3%, 고위험은 사업자 등의 9%와 물량의 9% 이상이다(제16조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표준위험국 원료를 쓰는 제품일수록 검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자는 제품의 자유유통 반입 또는 수출 전에 실사명세서 참조번호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제26조 제4항). 관할당국이 출시 전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품은 세관이 통관을 보류한다(제26조 제7항).

2. 제재

구체적인 제재 수준은 회원국이 정하되, EUDR이 정한 최소기준을 따라야 한다. 법인에 대한 상한 과징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EU 전체 연간 매출액의 4% 이상이 되도록 정해야 하고, 해당 제품과 거래 수익의 몰수, 최대 12개월의 공공조달·공적자금 배제, 중대하거나 반복된 위반에 대한 출시·수출의 일시 금지도 규정해야 한다(제25조 제2항).

3. 모의검사가 보여준 것

당국이 무엇을 요구할지는 모의검사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다. 네덜란드 식품소비자제품안전청(NVWA, Nederlandse Voedsel en Warenautoriteit)은 2025년 봄, 자발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을 상대로 시범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9] 수집한 정보를 위험 평가에 활용하지 않은 사례, 인증서가 어떤 위험을 줄이는지 따지지 않고 인증에 기댄 사례, 실제 출시한 제품이 증빙상의 필지에서 왔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한 사례가 지적됐다. 당국은 실사에 대한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개별 제품의 생산지와 공급망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U 집행위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에 제품을 처음 출시하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검사할 것을 권고했다. 검사 대상이 되면 EU 수입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한국 공급사가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필지 좌표와 증빙자료를 선적 건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Ⅶ. 맺으며

EUDR 의무는 계약 조건과 통관 구조를 통해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제품의 품목번호와 인도조건, EU 공장의 원료 조달처, 공급계약의 주요 조항은 한국 본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다. EU 규제이지만 국내에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

EUDR 시행일인 12월 30일까지 석 달도 남지 않았다. 먼저 해당 기업은 개정 부속서 I 을 기준으로 자사 품목의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 구조별 의무 주체를 파악한 뒤 계약을 정비해야 한다. 부속서 I 은 위임규정에 따라 다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검토 기준일을 기록하고 변경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9) NVWA, 「Nuttige inzichten na proefinspecties voor de ontbossingsverordening (EUDR)」, 2025. 8. 21.(nvwa.nl) 참조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EODES와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유의사항

이 득 렬 | 관세법인 스카이브릿지(관세사)

1. 질문&답변

협정명	한·EU FTA
질문	CO-PASS에서 원산지내역이 조회된다면 수입통관 또는 협정적용 사후신청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답변	수입신고 시 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포함해 법령으로 정해진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수입신고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 * 사후적용 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 원산지증빙서류 이때, 체약상대국과의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1]을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

1) 개요

2004년 한·칠레 FTA 발효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는 약 20년 이상 FTA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기준 60개국 대상으로 총 23개 FTA를 발효해 운영하고 있다. FTA 등 원산지에 근거해 체약당사국 간 수출입물품에 일반관세보다 낮은 세율의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특혜관세제도는 특혜세율 적용을 위한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가장 중요한 근거서류로 활용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러한 원산지증명서는 종이 형태의 원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종이서류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별도로 서류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2]되고, 분실이나 훼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실무상 불편함이 오랫동안 제기돼

1) EODES(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FTA 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

2) 화물운송 루트가 단거리인 경우, 상황에 따라 화물이 원산지증명서보다 먼저 도착해 원산지증명서 도착 전까지 수입통관이 보류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왔다. 특히, 원산지증명서 발송과정에서 분실이나 훼손이 발생한다면 발급기관으로부터 진정등본(재발급, Certified True Copy)을 발급받아 다시 수입자에게 발송해야 했으며, 이러한 시간지연으로 인해 수입국에서 통관이 보류되거나 납기일 준수 등 공급망 관리 사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포기하고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무상 애로사항은 각 국가별 관세당국 역시 지속적으로 공감한 문제였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FTA 원산지증명제도에서는 전자적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원본으로 인정하고, 수출국과 수입국 각 관세당국 간에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교환하는 시스템 구축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FTA 활용실무에 있어 이러한 전자적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운영시스템 현황과 이러한 시스템과 관련된 실무상 유의사항을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2) 원산지증명서 추적·관리 시스템 CO-PASS

관세청은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와 수입물품에 대해 상대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추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인 'CO-PASS'를 운영하고 있다. CO-PASS에서는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와 참조코드(Reference Code)를 활용해 원산지증명서가 권한 있는 발급기관에서 발급됐는지, 해당 원산지증명서 데이터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적정하게 송·수신됐는지 조회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로부터 수취하고 CO-PASS에 조회했을 때 해당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데이터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실제로 적정 발급기관에서 발급된 것이 맞는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의 CO-PASS와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일례로 인도네시아의 경우 인도네시아 싱글 윈도우[3]를 구축해 수입 물품에 대해 원산지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조회할 수 있으며, 인도의 경우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4]를 통해 인도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원산지증명서 조회 시스템을 구축한 국가의 세관에서는 수입신고 심사에서 협정관세율 적용 적정성에 대한 근거로 해당 조회 시스템을 통해 수출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적정성과 협정관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CO-PASS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데이터의 송신 여부와 수신 여부는 CO-PASS에서 하나의 화면으로 조회할 수 있으나 사실은 송신과 수신이 각각 독립돼 있는

3) 인도네시아 무역·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기관 시스템을 통합한 전자무역 시스템(https://insw.go.id/e-coo)
4) https://coo.dgft.gov.in

시스템임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 데이터의 송신은 우리나라 관세청 전산시스템으로 송신하고, 이렇게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하는 시스템은 상대국 세관당국 시스템이다. 따라서, 각 당사국 전산시스템 상태에 따라 송신과 수신은 독립적으로 이뤄지며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원산지증명서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송신했더라도 상대국 세관당국 시스템에 전산장애 등이 발생했다면 수신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5]할 수 있다.

결국 CO-PASS에서 조회되는 원산지증명서 데이터 송·수신 현황은 우리나라와 상대국의 각 세관당국이 구축한 전산시스템이 1대1로 연결돼 있음을 전제한다. 따라서 모든 종류의 FTA 원산지증명서가 CO-PASS에서 조회 가능한 것이 아니며, 조회 가능한 FTA 원산지증명서도 송신과 수신이 각각 독립적인 시스템임을 이해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CO-PASS를 활용하기 위해 전제돼야 하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세관 전산시스템의 1대1 연결체계를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고자 한다.

3) EODES란 무엇인가?

EODES란, FTA 필수 제출서류인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 정보를 협정 상대국과 전자적인 방식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EODES는 SWIFT(국제은행간통신협정)[6]나 SITA(국제항공통신협회망)[7]와 같은 전 세계 회원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통신망의 형태가 아닌 국가별로 1대1로 구축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6년 10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4개 국가를 대상으로 EODES를 구축했으며, 관련 세부현황은 다음과 같다.

EODES 개통국	개통 협정(7개 협정)
중국	한·중 FTA, APTA[8]
인도네시아	한·ASEAN FTA, 한·인도네시아 CEPA[9]
베트남	한·ASEAN FTA, 한·베트남 FTA
인도	한·인도 CEPA

이 표를 살펴보면, EODES로 교환 가능한 원산지증명서의 종류는 제한돼 있다. 즉, EODES 개통국이더라도 해당 개통국과 우리나라 사이에서 발효된 모든 특혜관세 협정이 EODES로

5)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국 세관 전산시스템 장애복구 이후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재전송하거나 그 밖의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6)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7) Society of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s of Airline
8) APTA(Asia-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9)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교환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우 모두 RCEP[10] 체약국으로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RCEP은 EODES로 교환되는 원산지증명서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EODES를 개통한 베트남으로 수출하더라도 RCEP 세율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했다면 이는 EODES로 베트남 세관에 전달되지 않는다.

EODES의 목적 중 하나는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전자적 형태로 대체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EODES로 전송되는 전자적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정보는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일부 외국세관에서는 세관원들의 재량에 따라 수입신고 심사과정에서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EODES로 수신받은 데이터의 일치성으로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EODES 개통 협정이라고 해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방치하는 것은 리스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사전에 수입자와의 소통을 통해 종이 원산지증명서 발송 필요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 원산지증명서와의 대조는 EODES 개통 초반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EODES가 개통되고 안정화되면 EODES 데이터를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과 동일하게 봐 수입신고 심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11]이다.

그러나, 수입국 세관에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다고 해서 원산지증명서 신청인(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류보관 의무도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지만 신청인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므로 상대국 수입통관을 위한 서류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보관 등의 관리는 별도로 유지해야 한다.

EODES는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항목별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의 데이터로 교환하는 시스템이므로 EODES를 개통할 때 국가별로 서식별 코드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EODES 개통 전 사전 합의단계에서는 중량 및 수량단위와 양 당사국 목적항(항구 및 공항) 코드와 명칭을 통일한다. 이러한 코드 통일로 인해 EODES 개통 이후부터는 중량, 수량에 대해 정해진 단위로만 원산지증명서 작성이 가능하며, 목적항 명칭 역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과 EODES 개통에 따른 중량 및 수량의 합의에서는 수량단위 PC(Piece)가 단위코드에 포함하지 않아 PC 대신 EA(Each)를 사용[12]해야 한다. 또한, 인도의 주요 항구 중 하나인 나바셰바(Nava Sheva) 항구는 EODES상 명칭을 'JNCH'로 통일했으므로,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에는 'Nava Sheva'라는 지명을 기재할 수 없는 것이 원칙[13]이다.

---

10)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11) 일례로, EODES 개통 초반 수입신고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했던 인도 세관당국도 2024년 5월 인도 재무부에서 발행한 'EODES 운영에 따른 전자 원산지증명서 허용 지침-F.No.20000/5/2013-OSD(ICD)'에 따라 현재는 EODES 데이터를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2) 이러한 수량단위 변경은 인보이스(Invoice) 등 선적서류상 단위까지 통일하도록 강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원산지증명서의 전자본 발급

일부 기관발급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발급뿐만 아니라 전자본 발급도 원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특정 FTA를 지정해 전자본(PDF 파일)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① **EODES는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이 상대국 세관으로 전자적 형태 데이터로 송신되는 것**인 반면, ② **원산지증명서 전자본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 출력 자체를 종이가 아닌 PDF 형태의 전자본 문서로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분	개념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법적효력	대상 협정
EODES	원산지국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상대국 세관으로 송신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법적효력 동일	• 한·중 FTA • 한·ASEAN FTA(베트남, 인도네시아 한정) • 한·베트남 FTA • 한·인도네시아 CEPA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전자본 발급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PDF 파일로 출력 가능	종이 원산지증명서와 법적효력 동일	• RCEP(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한정) • 한·인도네시아 CEPA • 한·ASEAN FTA(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한정) • 한·싱가포르 FTA • 한·베트남 FTA • 한·인도 CEPA

종이 원산지증명서는 1회 출력만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PDF 형태의 출력이 허용되는 FTA라면 PDF 형태로 원본을 출력했더라도 종이 원산지증명서 역시 1회 출력이 가능하다. 즉, PDF 형태 출력과 종이 원산지증명서 출력은 별개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협정이 PDF 출력을 허용한다면 상대국 세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PDF 파일로 수입자에게 전달해 제출하거나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 제출하는 방식 중 원산지증명서 출력 및 전달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결국, 수입자에게 어떠한 형태의 원산지증명서를 전달해야 하는지, EODES 개통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자에게 전달할 필요가 없는지는 수입국 통관 예정 세관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야 하므로[14] 사전에 수입자를 통해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13) 다만, 이러한 기재방식의 특수성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24년 4월 한국과 인도 양국 관세청 EODES 운영 협력회의에서 한·인도 CEPA 서식 Box 6란(Remark)에 'JNCH/Nava Sheva'를 병기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14) 다만, 현지 세관에서 적법하지 않은 요구를 하는 경우 우리나라 본부세관으로 해외통관 애로를 건의해 이러한 통관보류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3. 질문&답변의 해석과 실무상 유의사항

1) 질문&답변 사례 해석

질문은 CO-PASS에서 조회 가능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를 할 경우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가 질문의 핵심으로 보여진다. 즉, CO-PASS에서 조회 가능한 원산지증명서는 이미 EODES로 원산지증명서 교환이 가능한 협정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때 협정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의무가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신고 시 FTA 협정관세 적용 방법 원칙을 안내하고, EODES로 원산지증명서 내용을 세관에서 확인 가능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없이도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므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으로 보인다.

2) 우리나라 수입통관에서 협정관세 적용 시 유의사항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위한 세부절차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수입통관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 제8조에 근거해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해야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

협정관세율 적용절차의 원칙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15]를 작성해 세관에 세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 수입신고서와 함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한다. 다만, 이렇게 수입신고서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제출과 별개로 해당 수입신고 건이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되면 관련 선적서류와 함께 FTA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추가로 제출[16]해야 한다. 이렇게 제출되는 원산지증명서는 한·EU FTA와 같이 자율발급이 되는 경우 원산지 신고문안이 기재된 상업서류(인보이스, 인도증서 등) 형태로 제출하거나, 한·ASEAN FTA 등 기관발급의 경우 법정서식 형태로 원산지국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렇게 제출될 때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다.

앞서 안내한 원칙과 달리,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를 FTA 사후적용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 관세특례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15) 「FTA 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16) 다만,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 제출대상인 경우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세관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아닌 의무규정이다.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FTA 협정관세율 사후적용이 가능하며, 최초 수입신고를 하는 시점에는 기본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통관 후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해 세관에 제출하면, 기 적용한 기본관세율에서 FTA 협정관세율로 낮아진 세율에 상당하는 납부세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FTA 사후적용을 세관에 신청하는 경우 기 수입신고에서 신고한 관세율을 정정하기 위해 수입·납세신고정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수입신고를 할 때 FTA 협정관세율 적용은 적용시점에 따라 수입신고시 적용과 사후적용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모두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상대국이 EODES 개통국이며 적용 협정이 EODES 개통 협정에 해당한다면 세관에서도 이미 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송신 받은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생략[17]할 수 있다.

3) 수출물품의 상대국 수입통관 시 유의사항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면서 수입상대국에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려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신고 수리 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발급(또는 자율발급 FTA로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받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국 세관에 제시해야 FTA 협정관세율이 적용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국에 반입 가능한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EODES 개통국**이라면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없이도 수입통관 시점에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도 국가별 개별 법령에 따라 FTA 사후적용 제도를 운용하기도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이 가능한 것과 달리 사후적용 신청기한, 담보제공 여부 등 세부적인 절차는 각 국가별로 상이[18]할 수 있다. 또한 EODES 대상협정은 수입신고 시 FTA 관세율을 적용할 때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될 수 있으나 FTA 사후적용에서 생략되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EODES 개통 여부와 관계없이 현지 FTA 사후적용에서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이 요구되는지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다.**

17)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1항 제6호 단서규정 및 「특혜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제2항 등

18)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는 사후적용 자체를 운영하지 않는 반면, 베트남은 수입신고 시 세관당국에 특혜관세 소급적용 의사를 표시한다는 전제하에 수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사후적용이 가능하다.

4) EODES 확대와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의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ODES는 양 국가 간 상호 지정된 특혜관세 협정을 대상으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전자적 형태 교환으로 대체하는 시스템이며,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EODES 개통은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ASEAN 10개 국가의 경우 ASEAN 회원국 자체 원산지증명서 상호교환 등이 가능한 ASEAN 원산지관리 시스템(ASW, Asean Single Window)을 구축해 운영 중에 있고, ASEAN 10개국과 일본과의 EODES도 이미 구축해 운영 중이며, 한국 역시 개별 국가 간 교환시스템을 넘어서 ASEAN 10개국과 함께 상호교환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EODES 확대는 점점 종이 형태의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EODES 체제는 국가 간 상호교환 체제라는 점에서 아직 **EODES 미개통 국가와 발효된 FTA에서는 아직도 종이 형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유일한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EODES가 개통되더라도 서류보관 의무이행에 있어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아직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EODES는 비단 기관발급 FTA뿐만 아니라 자율발급 FTA에도 확대되고 있는 모습도 확인된다. 칠레의 경우 대부분 국가와 자율발급 방식으로 FTA를 체결·발효해 운영중임에도 사인인 수출자 등이 작성한 자율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를 칠레 당국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게 해 상대국에 발송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자율발급 FTA 활용절차에 있어 원산지 국가 정부기관이 운영하는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자율발급 취지에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각 국가별 관세당국이 상이한 것으로 보인다. EODES 시스템에 대한 자율발급 FTA 도입 여부는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확언할 수 없지만, 적어도 아직은 자율발급 FTA 활용에 있어 종이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수출입통관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본 코너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서 상담한 사례 중 주요 내용만 엄선해 제공합니다. 법률적인 유권해석이 아니며, 민원인에게 참조의 편의상 제공하는 것이므로 법률적으로 권한 있는 해석이 필요할 경우 서면으로 별도 질의하거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관세청 기획조정관 **납세자보호팀 고객지원센터**

징수

중대재해를 사유로 세액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관세법」 제10조에서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중략> ···

1. 전쟁·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중략> ···

③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2.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3.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또한, 「관세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이 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해 관세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사유에 관해서도 「관세법 시행령」 제2조가 적용돼 사유 입증을 거쳐 분납 여부가 결정됩니다. 관할 세관장이 제출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에 속하므로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여부, 제출(증빙)서류와 관해서는 관할세관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도산위기에 처한 성실 중소기업 등에 경영 위기극복 및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시행하는 중소수출입기업 활력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관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품목분류

전력계통 이상신호를 파악해 사고 확대를 방지하는 보호계전기(Protective Relay)의 HS Code를 알고 싶습니다.

문의하신 물품이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에 해당된다면 **제8536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으며, 세분류로 '**계전기(繼電器, Relays)**'에 해당된다면 **제8536.4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하 세번은 전압에 따라 달리 분류될 수 있으며,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에 해당된다면 **제8536.41-0000호**에, '**기타(전압이 60볼트 초과인 것)**'에 해당된다면 **제8536.49-0000호**에 분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			품명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 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
	4		계전기(繼電器)
	41	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49	0000	기타

관세충당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례

이 하 철 | 관세청 법무담당관실

Ⅰ. 들어가며

종래 대법원은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부정하고, 다른 구제수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무효확인소송이 보충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는 이른바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08.3.20. 선고 2007두6342 판결은 이를 변경해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면 별도로 무효확인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0조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까지 취소소송에 부당이득 반환 등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무효 등 확인소송에도 준용되므로, 위 2007두6342 판결 취지와 「행정소송법」 제10조 및 제38조에 따르면 원고가 세금부과처분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무효확인소송과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행정법원에 같이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판결[1]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신청하면서 신고세액보다 다액을 담보 제공한 원고가 피고 세관장이 이를 관세에 충당한 것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를 하면서 피고인 대한민국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을 함께 청구한 사건에 관한 판결이다.**

Ⅱ.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농산물 수입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다.

나. 원고는 2011.6.7.부터 2012.6.29.까지 수출업자인 중국의 C로부터 대두(백태), 팥, 서리태(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피고 세관장에게 각 톤당 거래가격을 대두(백태)

1) 수원지방법원 2026.4.9. 선고 2024구합73784 판결(확정)

는 미화 303달러, 팥은 미화 190~240달러, 서리태는 미화 248달러로 수입신고를 했다.

다. 이 사건 물품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물품의 가격변동이 커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이다.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대상 물품은 세액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입하려는 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대상물품을 신고 수리 전에 반출할 수 있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신청하면서, 현금 또는 보증서 제출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했다(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 이 사건 담보제공 금액은 피고 세관장이 이 사건 물품에 관해 사전세액 심사시스템(UNI-PASS, 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공시한 기준가격에 따라 산출한 관세에서 원고의 신고세액을 공제한 차액에 103%를 적용한 금액이다.

마.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 결과 원고가 신고한 수입단가는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2013.1.29.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세를 1,029,364,640원으로, 2013.1.22. 나머지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인정한 후 관세를 1,051,440,360원으로 각 경정·고지했다.

바. 피고 세관장은 2013.3.11.부터 2013.6.28.까지 원고가 현금으로 지급한 담보금액 합계액 557,147,920원을 이 사건 물품 중 일부에 관해 발생한 관세 등에 충당했다.

사. 피고 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금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산정한 후, 원고에게 2014.5.26. 이 사건 제1물품에 대한 관세를 1,680,540,600원으로 증액하고 2014.1.8. 이 사건 제2물품에 대한 관세를 615,965,350원으로 감액해 각각 재경정·고지했는데(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하고, 2차 부과처분에서 원고의 수입신고 금액을 공제한 부분을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이 사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2014.12.24.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위 판결은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2016.4.29.경 확정됐다.

Ⅲ.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수입신고 수리 전 수입물품을 반출하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할 때에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신고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피고 세관장은 신고수리 전 세액심사와 관련된 규정일 뿐 담보금액 결정과는 관련이 없는 구 「납세심사 사무처리」(2014.5.20. 관세청고시 제2014-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3-3-1조 제3항 제3호를 근거로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가격을 기초로 계산한 금액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행정지도한 결과, 원고는 이 사건 담보제공을 했다.

그러나 피고 세관장이 내부지침에 불과한 이 사건 고시에 따라 원고에게 신고세액보다 다액인 이 사건 담보제공을 하도록 하고 위 금액을 관세에 충당한 것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납부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의 담보금액에 관해 관세법령상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법률에 근거 없이 한 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다.

따라서 피고 관세청이 2016.2.3.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담보제공 금액 중 초과담보 충당금액을 충당한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한민국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위 초과담보 충당금액 합계액인 1,617,634,53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이 사건 담보제공에 따른 관세 충당이 무효인지에 관한 판단

1) 예외적 사전세액심사

구 「관세법」(2020.12.22. 법률 제17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관세법'이라 한다) 제38조에 의하면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하고(제1항),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제2항 본문),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세액을 심사한다(제2항 단서, 이하 '사전세액심사'라 한다).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가격변동이 큰 물품 등으로 인정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제5호) 등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삼고 있고, 구 「관세법」 제3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처리 지침을 정하는

이 사건 고시 제3-3-1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고시 규정'이라 한다)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의 물품의 의미를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물품으로서 사전세액심사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2)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 시 담보제공의무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 등으로부터 수입신고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구 「관세법」 제248조 제1항·제3항). 다만 35p 1)에서 본 바와 같이 사전세액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액 결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수입신고 수리가 지체될 수 있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로서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할 수 있다.

한편 구 「관세법」 제24조는 담보제공에 관한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금전, 납세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정하는 한편, 제3항은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구 「관세법」 제24조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에 관해 원칙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이어야 하나, '그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제3항)고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의 경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수입신고 내용대로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납세의무자로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을 반출할 수 있게 된다.

3)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른 담보금액 요구가 적법한지 여부

「헌법」 제75조는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 개별적으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어서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해당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 및 목적, 해당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하며, 나아가 각 규제대상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함을 요한다(대법원 2004.7.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300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관세법령의 내용과 체계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관세청장이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신고 수리 전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 사건 시스템에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에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관세법」은 관세의 확정방식을 신고납부주의로 전환하면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서도,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전세액심사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 사건 물품과 같이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탈루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구 「관세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②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제5호) 등을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입법권자는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현실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생성·변화가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세청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전세액대상 물품 지정에 관해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이라는 표지를 기준으로 폭 넓은 재량을 인정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에 관세청장은 위 법규명령에 따라 이 사건 고시 규정을 둬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 변동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기준가격을 정해 이 사건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 등으로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지정해 왔다.

③ 한편,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제1항·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은 납세의무자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과세가격 결정 이전에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해 유통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도, 세액심사 후 장래 확정될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처럼 구 「관세법」 제38조 제2항 단서의 사전세액심사 제도는 위 법령이 정하는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시 담보제공제도와 결부돼 운영되므로, 관세청장에게는 납세의무자가 사전세액심사 대상 물품을 반출할 경우 이 사건 고시에 따라 과세관청에 제공해야 하는 담보금액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이 사건 고시 제1-1-1조가 「관세법」 제3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이상, 「관세법」 제38조와 체계적으로 연결돼 있는 구 「관세법」 제252조, 제24조 제1항·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과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두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령의 위임 없이 관세청장이 임의로 이 사건 고시 규정으로 담보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④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역시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 요구할 수 있는 담보액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폭 넓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장이 이 사건 고시 규정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기준가격을 이 사건 시스템에 공시하고 그 기준가격에 따라 담보제공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에는 법령상 근거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해 당초 신고·납부한 관세는 678,871,420원에 불과한 반면, 피고 세관장이 세액심사 후 경정·고지한 최종 세액은 2,296,505,950원으로 그 차액이 1,617,634,530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보더라도, 사전세액신고 대상 물품 반출 시 이 사건 시스템 공시 기준가격으로 산정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관세 탈루 방지, 세관행정의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보일 뿐이다.

⑤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23.12.21. 제2300호로 개정된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은 제17조 제7항에 "종전 이 사건 고시 규정 사안에 관하여 기준가격을 정할 수 있고, 그 기준가격을 「관세법」 제252조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시 담보의 금액산정을 위한 가격으로 하며, 위 금액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표한다"는 취지의 명문 규정이 도입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구 「관세법」 제38조, 제252조, 제24조 제1항·제3항,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제8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이 사건 고시 규정의 내용과 체계,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고시 규정은 구 관세법령의 위임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물품을 준별하는 방법과 사전세액심사 대상인 물품을 사전 반출 시 요구되는 담보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함께 정하고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담보기준가격의 근거에 관해 명시한 위 훈령 제17조 제7항은 창설적 규정이 아닌 확인적 규정으로 이해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담보제공이 관세법령상 근거가 없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Ⅳ. 결어

이상과 같이 법원은 이 사건 담보 제공 및 충당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저가 신고를 통한 관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전세액심사 제도의 목적 및 사전세액심사 제도가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 시 담보제공제도와 결부돼 운영**되는 점, 「관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살펴볼 때 **법령의 위임 없이 임의로 담보금액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시스템에 공시한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담보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것에는 법률상 근거가 존재**한다고 봐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또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담보 제공 및 충당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므로 이에 대해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요건을 갖추려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전제돼야 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결론은 타당하다.

아울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존재를 가정해 보더라도 「관세법」과 「국가재정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이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납부 또는 징수 시점, 즉 담보가 충당된 시점으로 봐야 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형태·조리에 따라 다른 새우 품목분류
일부 열처리한 새우의 HS Code

이 영 주 | 중앙관세분석소

탱글탱글한 식감과 특유의 감칠맛으로 많은 이에게 사랑받는 새우는 구워 먹고 튀겨먹고, 국물 요리에 넣는 등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친숙한 수산물이다. 그런데 마트나 식당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새우를 들여다보면 조금씩 형태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머리와 껍질이 그대로 붙어있는 새우가 있는가 하면, 껍질과 내장이 제거된 새우, 꼬리만 남겨진 새우, 냉동된 새우 등 그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단순히 조리하기 편하게 손질한 정도의 차이일까? 아니면 관세 품목분류에서도 중요한 차이가 될까?

수입되는 새우는 그 **종류와 냉동·냉장 여부, 껍질이나 머리의 제거 여부, 조리 또는 가공 여부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새우'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물품이라도 어떤 상태로 수입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품목번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세번 정정 이유] 본 물품은 머리, 다리,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꼬리가 붙어있는 흰다리새우[Penaeus vannamei(영명: Whiteleg shrimp)]를 일부 열처리한 후 비닐팩에 포장해 냉동한 것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에 해당하는 제1605.21-9000호로 신고했다.

제16류 총설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 제16류**
>
>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또는 곤충의 조제품 총설**
>
> 이 류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예: 족(feet)·껍질·염통·혀·간·장·위]·피(blood)·곤충·어류(껍질을 포함한다)·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 류에는 제2류·제3류·제4류 주 제6호·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보존처리한 것을 분류**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
> ··· <중략> ···
>
> (2) 끓인 것·증기로 찐 것·구운 것·튀긴 것·볶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리한 것. 그러나 훈제 이전이나 훈제할 때에 조리되기도 하는 훈제한 어류와 훈제한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제0308호), **껍데기가 붙은 채로 증기로 찌거나 물에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 운송이나 동결 전에 껍데기를 벗기거나 안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로 데치거나 그 밖에 다른 형태의 열 처리(조리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만을 한 연체동물(제0307호)**과 조리된 어류·조리된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제0309호)은 제외한다.

제1605호에는 기본적으로 조리되거나 조제된 새우가 분류되나, 일부 제외 규정이 있다. 껍질이 있는 상태로 조리하거나, 운송을 위해 데치거나 열처리하면 제1605호에서 제외되고 있다.

다음 사례로 새우의 품목분류를 자세히 알아보자

새우 품목분류 사례	결정세번
호마루스종에 속하는 **바닷가재의 집게발 부분을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삶아서 냉동한 것**	제0306.12-9000호
머리, 꼬리, 내장, 껍데기를 제거한 흰다리새우[Whiteleg shrimp(학명: Penaeuse vannamei)]살에 소금, 폴리인산나트륨 등을 첨가한 후 일부 열처리해 냉동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g)	제0306.17-1090호
새우(학명: Penaeus vannamei)의 껍데기, 꼬리, 내장을 제거해 염수에 침지 후 열처리해 냉동한 것	제1605.21-9000호
새우머리(70%)에 배터믹스분말(밀가루, 변성정분, 옥수수분말, 소금 등)과 빵가루(밀가루, 옥수수전분, 마가린, 설탕, 효모 등)를 입힌 후 기름에 튀긴 다음 오븐에 구워 시즈닝 혼합 후 비닐 팩에 소매포장	제1605.21-1000호

일부 열처리한 새우의 경우 제1605호에 해당하는 조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제0306호에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일부 열처리한 본 물품도 제1605호에 해당하는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은 물품으로 판단했다.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것), 훈제한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갑각류(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0306.17-10호에는 냉동한 그 밖의 새우류** 중 '**새우살**'을 분류하고 있다.

본 물품은 흰다리새우[Penaeus vannamei(영명 : Whiteleg shrimp)]의 살을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306.17-1090호에 정정분류했다.

신고품명	신고세번(세율)	회보품명	정정세번(세율)
WHITELEG SHRIMPS	제1605.21-9000호 FCN1 8%	Peeled whiteleg shrimps, frozen	제0306.17-1090호 FCN1 8%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신간 도서안내

2026 개정판
관세법령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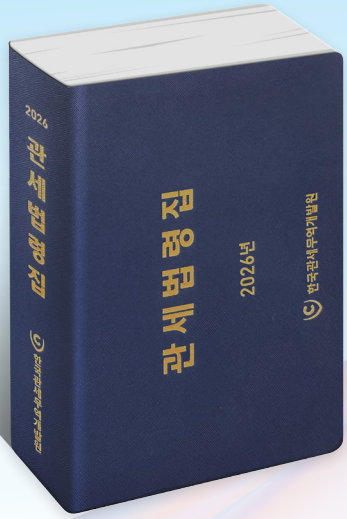

- **관세 행정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수록 법령 개편**
  「행정기본법」·「행정절차법」등 신규 수록
- **2026년 4월 1일까지 최신 개정 법령 반영**
  최신 법조문과 관련 고시·판례 통합 업데이트
- **법령 구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3단 구성**

2026 HS품목별
수출입통관편람

관세 · 무역 실무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기준



- **2026년 관세·통계 통합품목분류표 및 FTA 연차세율 반영**
  - 22개 FTA(CEPA, SECA 포함), WTO 협정 등 반영
  - 한·UAE CEPA, 한·에콰도르 SECA 신규 수록
  - 한·EU, 한·영국 FTA 상·하반기 세율 반영
-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및 간이정액환급률표 개정사항 수록**
- **통합공고 및 기타세율 규정, 내국세법 등 주요 개정사항 반영**

도서 구매 문의 안내

구매처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smartstore.naver.com/kctdi

※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더욱 다양한 도서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TEL (02)3416-5112
한국관세무역개발원 지식사업실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도서 판매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한국관세무역개발원
Korea Customs and Trade Development Institute